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문

주택유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84	99	101	116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5	20	33	16	94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정

구분	신청일시	신청방법	당첨자 발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023. 12. 4.(월) 09:00~17:30	- 인터넷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2023. 12. 12.(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로그인 후 개별조회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 거주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③ 만 19세 미만의 자녀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자</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기타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릅니다.</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선정기준 :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수 ▶ 주택공급신청자 연령 ▶ 추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td></tr>
<tr><td>우선순위
배점표</td><td>
<table>
<tr><th rowspan="2">평점요소</th><th rowspan="2">총
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점수</th></tr>
<tr><td>계</td><td>100</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1)미성년 자녀수</td><td rowspan="3">40</td><td>5명 이상</td><td>40</td><td rowspan="3">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td></tr>
<tr><td>4명</td><td>35</td></tr>
<tr><td>3명</td><td>30</td></tr>
<tr><td rowspan="3">(2)영유아
자녀수</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td></tr>
<tr><td>2명</td><td>10</td></tr>
<tr><td>1명</td><td>5</td></tr>
<tr><td rowspan="2">(3)세대구성</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td></tr>
<tr><td>한부모 가족</td><td>5</td><td>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td></tr>
<tr><td rowspan="3">(4)무주택기간</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td>5년 이상~10년 미만</td><td>15</td></tr>
<tr><td>1년 이상~5년 미만</td><td>10</td></tr>
<tr><td rowspan="3">(5)해당 시·도
거주기간</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td></tr>
<tr><td>5년 이상~10년 미만</td><td>10</td></tr>
<tr><td>1년 이상~5년 미만</td><td>5</td></tr>
<tr><td>(6)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td></tr>
</table>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td></tr>
</table>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